

#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종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36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5.

발 의 자 : 백종현 · 임종득 · 김기웅  
김예지 · 김태호 · 서천호  
박덕흠 · 안상훈 · 한지아  
김재섭 · 박준태 의원  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, 이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국내로 반입되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누구든지 상표권, 특허권,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말도록 하고,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이 제조·수입·판매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로 하여금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유통 근절, 수출 규제 지원, 규제 관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 화장품의 지식

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1항제5호, 같은 조 제3항 및 제33조의3 신설 등).

##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는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(이하 “지식재산 침해 화장품”이라 한다)

가. 「상표법」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

나. 「특허법」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

다. 「디자인보호법」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1항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이 제조·수입·판매되는 사실을 통보 받거나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사이버몰 게시글 삭제, 반품,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을 제33조의4로 하고,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의3(해외 안전 정보의 수집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 불

법 화장품 생산·유통 근절, 수출 규제 지원 및 규제 관련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지식재산처장과 협업하여 실시하는 해외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생산·유통 정보 등 모니터링
2. 화장품 수출 관련 규제정보 제공 및 컨설팅
3. 화장품산업 수출 관련 규제기관·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
4. 국가별 수출 관련 규제 대응 인허가 지원
5. 화장품의 허가·등록에 관한 국가 간 상호 인정 등을 위한 협력
6. 그밖에 규제 관련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화장품 해외 규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·관리하는 기관을 화장품 글로벌규제지원센터(이하 “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하고,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 요건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6조제1항제4호 중 “제1호의2 또는 제4호”를 “제1호의2·제4호 또는 제5호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 
<신 설>

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
화장품이 제조·수입·판매되  
는 사실을 통보 받거나 이를  
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  
또는 판매자에게 소비자 피해  
방지를 위해 사이버몰 게시글  
삭제, 반품, 환불 등 필요한 조  
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 
이 경우 요청을 받은 영업자  
또는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 
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

제33조의3(해외 안전 정보의 수

집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 
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·유통  
근절, 수출 규제 지원 및 규제  
관련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  
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  
진할 수 있다.

1. 지식재산처장과 협업하여 실  
시하는 해외 지식재산 침해  
화장품 생산·유통 정보 등  
모니터링
2. 화장품 수출 관련 규제정보  
제공 및 컨설팅

3. 화장품산업 수출 관련 규제 기관·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

4. 국가별 수출 관련 규제 대응 인허가 지원

5. 화장품의 허가·등록에 관한 국가 간 상호 인정 등을 위한 협력

6. 그밖에 규제 관련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화장품 해외 규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·관리하는 기관을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(이하 “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하고,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 요건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3조의3(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(생략)

제33조의4(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(현행 제33조의

<p>제36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제16조제1항제1호·<u>제1호의2</u> 또는 <u>제4호</u>를 위반한 자</p> <p>② (생략)</p>	<p>3과 같음)</p> <p>제36조(벌칙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제16조제1항제1호·<u>제1호의2</u> · <u>제4호</u> 또는 <u>제5호</u>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--	--